I.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I.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16세기는 조선 초기에 완성된 국가질서가 이완된 시기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초기의 혁명적 권력을 토대로 정립된 강고한 국가권력과 국가의 지배층을 이루는 사족들이 지배권력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사족지배체제'란 그러한 국가체제를 염두에 두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해된다.

사족지배체제란 사족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라는 의미이다. 사족지배체제에 대해서 "관권과의 일정한 타협 위에서 군현 단위 및 촌락사회에서 그들의 향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사족들이 관권과의 타협 위에서 吏民을 통제하고 있었던 향촌지배구조"라는 정의가 있다.1) 이러한 구도를 조선 말기까지 발전시켜서, 수령의 향혼지배를 의식하는 입장에서는 사족지배체제를 '守令—士族主導 鄕村支配'라고 바꾸어 표현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사족지배체제'라는 말을 향촌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 중기의 지배체제 일반으로 정의한다면, 사족지배체제를 "조선시대 사족지배를 위한 법률, 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3) 물론 사족지배체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향혼

¹⁾ 金仁杰,《朝鮮後期 鄕村社會의 變動에 관한 硏究-18·19세기 '鄕權' 擔當層의 變化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高錫珪、《19세7》鄉村支配勢力의 變動과 農民抗爭의 樣相》(서울大 博士學位論 文, 1991).

³⁾ 金炫榮,《朝鮮後期 南原地方 士族의 鄉村支配에 관한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 文, 1993).

사회에서 국가권력(수령권)과 사족지배권과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물론 그러한 점을 부각시킨 공로는 있지만—사림과의 성리학적 향촌지배 이데올로기의 관철과 그러한 이념에 의한 체제 구축이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제도, 관행 및 이데올로기의 총체가 무엇인가에 대한포괄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족지배체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시기라고 알려진 16 세기 사족의 향혼지배의 여러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사림파에 의한 향혼지배가 전개되어 이른바 사족지배체제가 정착되는 시기이므로 사족의 향혼지배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사족지배체제의 구체적인 의미를 천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려 말 재지지배집단이었던 향리층이 조선 초기에 在地士族과 吏族으로 분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재지세력은 향리층이 이탈되고 品官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품관층은 사족층의 모집단이면서 향촌사회의 지배층이기도 하다. 이러한 품관층은 16세기 이후 관직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는 사족과 그렇지 못한 비사족으로 구분되어 간다.4)

이렇게 계층분화가 꾸준히 진전되는 가운데, 사족이나 품관향족이나 모두 유향소를 구심점으로 향촌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자신들의 지방지배를 관철시켜 나갔다. 유향소 이외에도 이들은 군현 단위에서는 司馬所, 鄕校 등 향촌기구에 참여함으로써 향론을 형성하였고, 면리 단위에서는 향약의 시행을 통하여 향촌지배를 실현하여 갔다. 한편 이 시기에 이들 재지세력들이 향촌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체통과 위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리학적 교양과 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력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16세기 사림파의 등장과 함께 중앙 정계는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림파들은 자신들의 기반인 향촌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강화 하려 하였다. 그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적 지방지배의 이념을 들고 나왔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유향소의 복립을 통한 향권의

⁴⁾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出版部, 1979).

장악과 향약을 통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이었다.5)

조선 초기 군현제의 정비와 수령권의 확립을 통하여 안정된 지방지배질서 위에 사림파들에 의한 새로운 지방지배의 구상이 전개된 것이다. 사림파들은 재지사족을 그들의 지방지배 실현의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이다. 국가에서도 군현제와 수령만으로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향촌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재지세력의 변화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기구를 장악하여 어떻게 지방을 지배하였는가, 이들과 국가권력의 대행자인 수령과의 관계는 어떠하 였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조선 초기 이래 국가의 지방지배와 관련된 여 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조선 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정책은 일관되게 지방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 하는 것이었다. 즉 고려시대의 귀족세력인 사심관과 연관되어 있는 유향소를 혁파하여 재지세력의 성장 가능성을 제거하고 나아가〈鄕愿推覈法〉과〈部民 告訴禁止法〉을 만들어 재지세력의 발호를 억제하였다.

조선왕조의 개국과 함께 새 왕조의 지배층은 고려시대의 재지지배층이었 던 향리층을 사족층과 이족층으로 구분하여 향리를 단순히 행정사역계층으 로 격하시키고 품관사족층을 국가의 지방지배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왔다. 즉 〈元惡鄕吏處罰法〉과 같은 조선 초기 향리층을 억제하는 일련의 정책은 향리 층의 지위격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고려 말 添設職·檢校職 등 을 통한 광범위한 품관사족층이 형성되었지만, 국가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특 별히 일반 양민층과 구별하는 정책을 써왔던 것은 아니었다. 즉 國役의 分定

⁵⁾ 李泰鎭,〈士林派의 留鄕所 復立 운동-조선초기 성리학 정착의 사회적 배경-〉 (《震檀學報》34·35, 1972·1973).

^{―,〈}朝鮮前期의 鄕村秩序-성리학적 질서의 확립을 중심으로-〉(《東亞文 化》13,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1976).

^{-,〈}士林派의 鄕約普及運動-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韓國文 化》4,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83).

에 있어서 이들 품관사족과 일반 상민과의 구분이 크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재지사회에서의 향리와 품관사족의 구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 훨씬 늦은 것이었다. 즉 1530년대의 안동부 향안에는 사족뿐만아니라 향리의 중손·사위·외손 등까지 입록되어 있었다. 이는 고려시대 이래 재지지배세력을 이루었던 향리층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억제하고 견제하려고 했지만, 재지사회에서는 사족과 향리의 구별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서로 통혼을 하고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동부에서도 16세기중반 이후 점차 향리와 관련이 있는 족과를 향안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여 16세기후반에 이르면 완전히 향리와 사족품관층의 구별이 일단락 된 것으로이해된다.6)

향리세력의 억제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중앙정부는 향리세력에 대신하여 새로이 재지품관세력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이번에도 국가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토호품관을 억제하는 제반 조치들을 취하였다. 즉 개국 초의 주요 억제 대상이었던 재지세력이 향리들이었다고 한다면 15세기후반 이후에는 그러한 억제 대상이 재지품관층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표〉조선 초기 지방지배에 관련된 법적 조치

시기	내 용	전 거
태종 6년(1406)	留鄕所 혁과	《太宗實錄》6년 大司憲 許應 의 留郷所 폐단 상소
태종 11년(1411)	郷愿推覈法 강화	《太宗實錄》11년 10월 을사
태종 17년	申明色 혁파	《太宗實錄》17년 11월 무인
세종 2년(1420)	部民告訴禁止法 시행	《世宗實錄》2년 9월 무인
세종 2년	元惡鄕吏法 강화	《世宗實錄》2년 11월 신미
세종 5년	奸吏推覈法	《世宗實錄》 5년 5월 정미
	《經國大典》元惡鄕吏條	
중종년간	土豪品官 兩界徙民 '品官과 사족 구별'	

⁶⁾ 金炫榮, 〈1530年 安東地方의 鄉案, '(嘉靖庚寅)座目'의 分析〉(《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2).

鄭震英,〈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 사, 1998).

16세기 이후 국가에서는 全家徙邊律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족과 일반 상 민을 구분하게 되었다. 즉 사족과 상민을 엄격히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6세 기 이후의 현상이었다. 즉 사족이 죄를 범하여 入居를 하게 되었을 때, 사족 을 일반 양인이나 노비들과 똑같은 律로 적용할 수 없다는 데서 사족의 범 위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兩界의 방비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향리 · 역리 · 공사천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던 세종대의 4차례의 徙民 입거에 뒤이어 중종대에 다시 북방 사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종 20년(1525), 정부는 朝官을 下三道에 파견하여 豪强 品官과 無斷鄕曲, 元惡鄕吏를 抄出하여 사민할 것을 결정하였다. 호강품관이 란 10석 이상의 公債不納者,7) 軍役을 피하는 양인을 1口 이상 冒占한 자를 초출하는 것이었다. 처음 하삼도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사민의 대상이 뒤에 는 황해ㆍ강원ㆍ경기에까지 확대되었다. 중종 20년대의 사민입거 이후, 중종 38년에도 사민입거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좀더 엄밀한 〈入居節目〉이 마련 되었다.8) 중종 20년의 '入居罪'는 품관이나 향리를 막론하고 비리행위자를 처 벌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품관에 대한 규제는 마지막 조의 品官吏民으로서 수령을 고소한 자에 대해서만 규정된 것이라면, 중종 38년의 〈입거절목〉은 주로 호강품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즉 제1조가 호강품관으로 무단향곡하는 자, 제 3·4·5조도 주로 호강품관이 향촌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 즉 양민이 나 공사천을 모점하거나 공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입거절목〉에 의하여 사민의 대상을 초출하는 가운데, 晋州의 留 鄕所인 진주 생원 孫蘭直이 猾吏의 배척을 받아서, 손난직이 수령을 고소하 고 非理爭訟하였다고 호강품관으로 지목되어 입거되게 되었다. 그런데 진주 유생들은 손난직이 억울하게 호강품관으로 지목되었다고 정부에 호소하여 兵曹와 정부에서 의논하게 되었다. 논의 결과, 손난직은 생원이므로 전가사

⁷⁾ 뒤에 15石, 정식으로〈入居節目〉이 확정되었을 때는 25石으로 늘어났다.

⁸⁾ 이 규정은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족과 관련된 조항은 12조의 "品官吏 民이 감사, 수령을 고소하는 자"를 入居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5, 9, 10, 11조는 豪强品官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규정은 19년 후에 호 강품관을 좀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정리되었다(《中宗實錄》권 51, 중종 19년 7월 경인·권 100, 중종 38년 2월 정해).

변은 면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다른 사족과의 형평이 문제로 되고, 사족을 향리나 양민과 똑같이 전가사변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었다. 즉 사족을 전가사변할 경우, 사족은 노비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강제로 사족을 입거시키게 되면 노비가 따라가지 않아 곧 유리하게 되므로 實邊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족은 전가사변을 면하고 그 대신 之次律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때 사족이란 누구를 지칭하는지, 즉 사족의 범위가문제가 된 것이다.

이 때 정해진 사족의 범위는 자신이 생원·진사인 자, 내외에 顯官이 있는 자와 文武科 자손(문무과 급제자 및 그 자손)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현관의 범위가 문제가 되어 동서반의 正職 5품 이상, 監察, 6曹郎官, 部將, 宣傳官, 縣監까지를 현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9) 이 규정은 《各司受教》에도 수록되어 있다. 10) 자신이 생원, 진사이거나 자신의 친가나 외가에 동서반 정직 5품 이상이나 감찰, 6조 낭관, 부장, 선전관, 현감 같은 현관이 있거나 문무과 급제자의 자손이 사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16세기 초반에 사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사족에 대한 정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사족을 일반 양인과 똑같이 徙民律에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사민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차율을 적용할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족의 법제적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규정을 보면, 주요 관직의 보유와 과거합격 여부가 사족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제적 규정은 물론 향촌사회에서 사족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었지만, 관직이나 재산, 통혼관계, 유교적 교양과실천 등이 향촌사회에서 사족을 변별하는 여러 가지의 기준 가운데서 관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국가에서 파악하는 사족이란 이러한 본인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소지하였는가의 여부, 내외의

^{9) 《}中宗實錄》 권 55, 중종 20년 8월 무신.

^{10)《}各司受教》刑曹 受教, 庚戌(1550년) 2월 27일.

[《]各司受敎》는 명종 원년(1546)부터 선조 4년(1571)까지의 수교가 수록되어 있고, 1573년 이후의 수교가 追錄되어 있다.

선조가 현관이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그 족속에까지 확대한 것은 문과와 현관 역임자에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 로 파악되는 사족층은 이러한 요소를 갖춘 사람과 그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 로 확대해석되고, 사족지배체제는 이러한 신분층이 그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총체를 말한 다고 하겠다.

또한 16세기 중엽,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족과 상민의 엄격한 구분을 지 시하는 傳敎가 내리는 것은 이 시기가 사족과 상민의 班常制的인 구분이 실 현되어 가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명종은 우리 나라에서 사족과 상인의 구분 이 엄격하여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15세기 중엽부터 사족을 능욕 하거나 구타한 자에 대해서 전가사변의 律을 적용하였는데 중간에 권신들에 의해 폐지되어 朝官사족과 상인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는 사족을 능욕하거나 구타하는 상인과 천인에 대해서는 전가사변율을 적용 하라고 말하고 있다.11)

물론 이러한 법제적인 신분 범위 규정이 실제로 향촌사회에서 그대로 적 용이 되었는가는 의문이지만, 이러한 법제적 규정이 계층간의 通婚이라든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국가에서 사족에 대한 기준을 생원, 진사, 문무과 등 관직취임 자격과 관직취득 여부를 가지 고 설정한 이후 관직취임 자격과 관직취득 여부는 향촌사회에서도 가장 유 력한 계층구분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15세기 조선의 개국 초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 지는 품관층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진다. 물론 품관층의 정치적 · 사회 적 지위는 이러한 시기적 변화에 따라 달라졌으리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品官'은 在地품관·留鄕품관·閑良품관·受田품관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科田法에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아 軍田을 受給받음으로써 조선 초기의 광범한 지배집단의 모체를 이루는 것으로, 고려 말에는 檢校職 이나 添設職 등의 職事는 없고 品階만을 받은 층을 품관이라고 지칭하였

^{11)《}各司受教》刑曹 受教, 甲寅(1554년) 4월 4일.

다.12)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품관이 留鄕化·在地化함으로써 그리고 유향소를 구성하고 향임층을 맡게 되면서, 이제는 관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향임을 맡는 층을 품관이라고 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향임층이 세습화되어 향족을 품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國大典註解》에 "품관이란 이미 9품 정종의 품계에들어온 자를 말한다. 바로 유품관이다. 따로 한 고을의 풍속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 경재소이고 시골에 있으면 유향소이다"¹³⁾라고 하여품관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품관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용어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中宗實錄》에서도 북도의 풍속을 논하면서 품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鄕中의 土類를 품관이라고 한다"는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¹⁴⁾ 《경국대전주해》에서는 품관을 유품관과 재지품관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반해서 《중종실록》의 주해는 품관을 향중사류라고 규정하였다. 이 두 해석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상 품계만을 받은 많은 流品官들이 향중에 사류로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향중사류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部民告訴禁止法〉에서도 관찰사, 수령에 대해 고소를 할 주요 계층으로 品官吏民을 들고 있는데, 품관이 향혼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력임을 말해주는 것이다.15) 향혼사회에서 품관의 발호를 금지하는 것이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요체였던 것이다.16) 즉《大典續錄》・《後續錄》등에서도 품관으로서 수령과 백성을 침학하는 자에 대해서 徙邊律을 적용하여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품관은 유향소의 좌수·별감을 배출하는 모집단으로 이해된다. 즉 품관 중에서 좌수·별감이 천거되어 경재소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다. 즉 좌수·별감과 함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재지세력인 것이다.

¹²⁾ 韓永愚,〈麗末鮮初의 閑良과 그 地位〉(《韓國史研究》4, 1969). 李成茂,《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0).

^{13)《}經國大典註解》後集 刑典.

^{14) 《}中宗實錄》 권 45, 중종 17년 6월 병자.

^{15) 《}經國大典》 권 5, 刑典 訴冤.

^{16)《}大典後續錄》 권 5, 刑典 公賤・雜令.

이렇게 사족과 상인이 구분되어 사족지배체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이제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들어서면 향촌사회의 지배층 안에 서도 품관과 사족을 구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향교에서 座次를 구별하는 문제라든가,17) 사족과 품관층이 확연히 구분되 어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사족층은 중앙의 관직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것이 주요 판단 기준이고, 지배층이면서도 그러한 관직과 연결된 적이 없는 층이 유향소의 좌수 · 별감 등 향임으로서 향권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 는 층이 정립되는 것이다.18)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이들 사족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수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물론 우리 나라 전 시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수령의 절 대적 우위가 부정된 적은 없었다. 특히 〈부민고소금지법〉은 15세기 말에 제 정된 후 더욱 강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수령권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수령의 탐오와 불법이 우 려될 정도였다.

즉 16세기 중엽에는 국왕이 각 관의 수령들이 백성을 침학하고 불법을 저 지른다고 하여 〈부민고소금지법〉의 폐지 내지 완화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朝臣들은 국가의 등급과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의 견에 대해 원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이 논의과정에 보면, 원래〈부민고소금지법〉이 元大典(《經國大典》)에는 杖 100, 徒 3년에 그치고 있으나, 그 후의 受敎(《大典後續錄》에 수록)에서는 全家 徙邊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일이 있거나 수령이 불법을 해도 어 쩔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니 〈부민고소금지법〉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하자 는 입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래의 법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부민고소금지법〉아래에서도 관찰사가 點陟을 하고 公論이 있어 수령을

¹⁷⁾ 李 滉、《退溪全書》附錄〈言行錄〉 권 2.

¹⁸⁾ 李文載,《石洞遺稿》 권 6, 漫記.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 좌의정 沈連源이 국왕에게 回啓하기를 "조정의 이목이 비록 원방에는 미치지 못하나 감사가 이미 출척의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조정에 이목의 관원이 있어서 불시에 어사가 나가니 수령이 범법하고 침어하는 것은 저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 법을 기다려(이 법이 폐지 또는 완화되기를 기다려) 민원을 구하겠는가"라 하여,19) 아직 수령의 위상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기강이 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감사가 수령을 출척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정의 이목이 되는 관원들이 공론을 들어 수령을 견제한다는 점이다. 조정의 이목이 되는 관원이란 사헌부나 사간원의 관원을 말하는데, 공론이 어떻게 만들어져 전달되는가. 그것은 아마도 재지사족들의 향촌기구들을 통하여 중앙에 전달되리라고 생각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경재소-유향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처럼 국가에서〈부민고소금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수령권을 보호하려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재지세력들의 힘이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20) 따라서 재지세력을 규제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지던 16세기의 《대전후속록》까지는 법전에 수령을 규제하는 조항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었으나, 17세기에 들어가서 수령에 대한 통제 내용을 담은 조항이 숙종 24년(1698),《受敎輯錄》의 吏典에 독립적으로 수령조 13개 조항이 설정되기시작하여, 18세기 초의 《新補受敎輯錄》 단계에서는 무려 44개 조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족지배체제가 흔들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조선 중기 초반에는 재지세력을 억제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수령권이 강화되어 가자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국가에서 수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점에서 본다면 16세기의 사족의 향권참여가 다른 시기보다도 컸던 것으로

^{19) 《}明宗實錄》 권 11, 명종 6년 7월 무술.

²⁰⁾ 崔異敦은 부민고소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세조 12년부터 直告制를 허용함으로써 수령 고소의 관행이 성행하였다고 한다(崔異敦,〈조선초기 守令告訴 관행의 형성과정〉,《韓國史研究》82, 1993).

인정된다.

한편 16세기까지 각 지방에 두어졌던 교수 · 훈도의 역할에도 주의를 하여 야 할 것이다. 조선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정착과 실천을 위하여 각 고을마 다 향교가 설립되고 그러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군현마다 교수와 훈 도를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생들의 교육 회피와 교수 · 훈도에 대한 정부 의 불충분한 대우 등으로 사실상 중앙의 成均館과 4學을 제외하고는 향교교 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불완전한 틈을 재지사족 들은 사우와 서원의 설립을 통해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고, 결국 교수와 훈 도의 파견은 폐지되었고. 향교의 기능 중 교육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화하게 되었다.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이들 지배층이 어떠한 기구를 통하여 어떻게 지방을 지배하였는가. 이들 사족들의 향촌지배기구로 우리는 유향소・향약・서원・사마소・향교・문중 등 여러 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서원은 17세기 이후 재지사족의 향촌기 구로 크게 증가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문중은 그보다 더 늦은 18세기 이후 재지사족의 향촌조직으로 발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재지사족의 향촌기구로써 향약의 도입과 정착과정 및 그 전개과정에 대 해서 검토하고, 나아가 유향소·향교와 사마소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을 하 고자 한다.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향약은 사림파들의 지방지배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단순히 교화적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유향소나 서원 등 지방지배기구를 통 한 향약의 실시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향촌지배를 관철시켜 나갔 다.21) 이들 향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세의 수취, 환곡의 분

²¹⁾ 李 珥、《栗谷全書》 권 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배, 군역의 차출 등에 관여하여 향권을 행사하였다.22)

향약으로서 이른 것은 15세기에 李先齊가 전라도에서 광산향약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향약이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사림파에 의한 소학실천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趙光祖 등 사림파들이 기묘사화에 의하여 타격을 받으면서 일시 주춤하였다. 그러나 사림세력들은 자신들의 지방지배의 한 방편으로 향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행하였다. 퇴계는 예안을 중심으로 〈예안향약〉을 실시하였고, 율곡도 자신이 수령을 역임한 청주에서, 외가가 있는 해주에서, 선산이 있는 파주에서 각각 향약을 실시하였다.23) 퇴계와 율곡의 향약은 각각 주자의 향약을 모범으로 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변용시킨 향약이었다.

주지하듯이 향약은 北宋末 陝西省 藍田縣人 呂氏 형제에 의해 시작되어, 주희가 그것을 증손하여 성리학의 고전인 《小學》에 수록함으로써 성리학적 향촌지배원리의 하나로 정착되게 되었다. 조선시대 유교국가를 표방한 가운데 성리학은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漢唐儒學 등이 지배원리로 활용되어, 성리학만이 지배원리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새 지배세력은 성종대의 鄕飲酒禮 보급운동, 중종대의 鄕約보급운동 및 소학실천운동, 선조대의 書院건립운동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향촌사회지배를 위한시도를 하였으나,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실천을 하게 된 것은 향약보급운동이다.

향약은 사림파들에 의하여 향촌지배원리로 받아들여져서 중종대에 조광조 일파의 급진사림파에 의한 도학정치의 일환으로 경향 각지에서 향약이 실시 되었으나 그들의 정치적 실패와 함께 향약에 의한 지방지배도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그러나 중종 12년(1517) 경상감사 金安國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의 諺解本이 출간되고, 선조대에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 논의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확산되어 갔다. 퇴계와 율곡 단계의 향약 즉 16세기 후반의 향약은

²²⁾ 崔是翁,《東岡遺稿》권 2.

²³⁾ 金武鎭, 〈栗谷 鄉約의 社會的 性格〉(《學林》5, 延世大, 1983).

^{----, 〈}朝鮮中期 士族層의 動向과 鄉約의 性格〉(《韓國史研究》55, 1986).

우리의 체질에 맞는 향약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퇴계의 향약이 사족 중심의 자율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면, 율곡의 향약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향약으로 변용되었다. 즉 半官 기구인 유향소를 활용하여 관권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海州一鄉約束〉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社倉契約束〉처럼 지역적인 범위가 20리를 넘지 않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17세기 이후에〈해주일향약속〉은 향안을모태로 하는 향안조직으로 발전하여 이른바 군현 단위의 향촌사회를 규정하는 '鄕規'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고,〈社倉契約束〉은 일정한 지역공동체를 단위로 생활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洞約(洞契)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사회적・신분적 변화와 함께, 퇴계의 향약은 儒・鄕이일치하는 橫南型의 향규로 발전하고, 율곡의 향약은 유・향이 분기된 호남형・호서형의 향규로 계승된다. 17세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향약이실시되었다. 즉 각 고을마다 향규가 만들어지고, 각 촌락마다 동약이 실시되었다.

(2) 유향소의 기능

여러 가지 재지사족의 향촌기구 중에서도 국가의 지방기구 속에 반공식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유향소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향소는 선초부터 두어졌다가 국가의 지방지배 강화책의 일환으로 파치되었으나 16세기에 들어와 사림파들의 건의로 다시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다시 만들어진 유향소는 읍격에 따라 부 이상의 대읍에는 좌수 1명과 별감 3명을, 군에는 좌수 1명과 별감 2명을, 현에는 좌수 1명과 별감 1명을 두었다. 이들 유향소의임원인 좌수와 별감은 유향품관들 중에서 논의를 하여 경재소가 임명하였다.경재소는 그 지방 출신이나 그 지방과 8향 이내의 연고가 있는 재경 관인들로 구성되었다. 유향소에서는 좌수와 별감에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향안이다. 향안은 따라서 鄕案・留鄕座目・鄕中座目・鄕中座目・鄕至目・鄕射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작성되었

²⁴⁾ 최근《橫南鄉約資料集成》(橫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6)을 필두로 하여 향약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속속 간행되고 있다.

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향안은 경상도에 35개 지역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전라도에 22개 지역, 충청도에 6개 지역, 강원도에 4개 지역 등 총 76개 지역이다.²⁵⁾ 그러나 이는 조사가 전국적으로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어서 훨씬 더 많은 향안이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의 대부분의 군현에서 그 지역 사족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향안에의 입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3향 여부에 있었다. 3향은 부향, 모향(모향은 외삼촌의 입록 여부가 기준이다), 처향을 의미하는데, 父・母・妻 3향이 모두 같은 고을의 舊鄕案에 입록되어 있으면 3향이고 그 중 2개가 입록되어 있으면 2향, 1개가 입록되어 있으면 1 향이 된다. 이 가운데 3향인 경우에는 바로 입록이 되고(이를 直書라고 하였다), 2향 이하인 경우는 기존 향원들이나 향중의 원로들에 의하여 투표를 거쳐서 입록되었다(이를 圈點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향안에의 입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지역에의 토착성 여부이고, 그 다음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신분적 제한(관직 여부보다는 적서의 구별)이었다. 俛仰亭 宋純과 藥圃 鄭琢이 각각 거주지의 향안에 입록하기 위하여 향로들에게 잔치를 벌여 주었다던가 하는 고사는 향안에의 입록 기준이 관직 여부가 아니라 그 지역에의 토착성 여부가 향안 입록의 1차적 기준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향안 입록 기준은 17세기 이후 한결 강화되었고, 그것은 결국 18세기 이후가 되면 향안의 파치로 귀결되게 된다.

이렇게 향중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반 운영규정은 향규로 정리되어 있다. 향규는 향중입의·입의·입법·완의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규정되었지만, 향규의 기본 내용은 향안에의 입록 기준(이를 권리로 표현하면 郷籍權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좌수·별감 등 향임을 선출하는 규정(이를 鄕薦權이라고 할 수 있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들의 향권과 중앙정부 또는 중앙권력과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관찰사)-수령의 체계로 전달되 고 수령이 향리, 군관 등 자신의 手下機構를 활용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공식

²⁵⁾ 金炫榮, 〈조선시기 사족의 향촌지배 연구와 자료〉(《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적인 지방통치기구 이외에 국가에서도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활용되고 있는 유향소의 운영 메카니즘이 사족지배체제의 중심으로 자리하면서 존재 하고 있었다. 사림파의 지방장악의 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의 복설 논의를 거 치며 치폐과정을 반복하다가 16세기에 들어와 정착된 유향소는 향촌사회 내 에서는 수령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세 · 군역 등 국가의 지방통치에 중 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향소가 수령과 대립관계에 놓이면서 그 지역 사족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향소가 수령과 대립하면서까지 사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경우는 그 지역 사족들의 재경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경재소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물론 경재소가 지방 품관 층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즉 중앙정부-수령으로 이어지 는 공식적인 지방지배 루트와 경재소-유향소로 이어지는 비공식적인 지방 지배 루트도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재소-유향소로 이어지는 지방 지배 루트야말로 사족들이 그들의 의지에 따라 지방지배를 실혂할 수 있는 기구였던 것이다.

지방 수령의 비행에 대한 風聞彈劾의 루트를 통해서 재지사족은 수령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었다. 《大典續錄》에도 留鄕色掌을 府 이상은 4인, 郡은 3인, 縣은 2인을 差定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임무를 규정하여 풍속에 관계되 는 것을 논죄하도록 하였는데, 경재소에 移文하여 논죄하도록 하고 있다.26) 풍속에 관계되는 것의 범위가 명확치는 않으나 이를 보면 경재소와 유향소 의 상응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한편 역으로 색장이 인연하여 작폐하는 경 우에는 관찰사 및 사헌부가 탄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출신 중 앙관료는 유향소를 통하여 재지사족을 지배하기도 하고 재지사족의 지방지 배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16세기 지방관을 역임했던 權機(1478~1548)과 權文海(1534~1591)의 수령 재임시의 일기를 통하여 유향소와 수령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권벌이 永川군수 때인 중종 9년(1514) 37세 때의 일기인 《永陽日記》에도

^{26) 《}大典續錄》 권 3, 禮典 雜令.

수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좌수·별감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9월 14일에 영천군수에 제수되어 10월 13일에 辭陛를 하고, 11월 2일 현지에 부임하여 훈도와 생원들을 접견하고 바로 기관들을 감사, 병사, 수사, 수영우후 등에게 禮狀을 보냈다. 이틀 후인 4일에는 좌수를 접견하고, 다음날인 5일에 別置倉에 가서 유향소 임원들과 함께 荒租 1,880석을 監納하였고, 그 다음날인 6일에도 관채(환곡) 황조 2,189석과 太 68석, 木麥 7석 등합계 2,214석을 감납하였다. 다음날인 7일에도 의창에 앉아 공채를 납입하는 것을 감독하였다.27) 이와 같이 환곡을 분배하고 납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유향소의 임원인 좌수 또는 별감이 함께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다.

선조 14년(1581) 권문해의 공주목사시의 일기에 의하면, 고을의 옥에 간혀 있는 죄인들에 대한 감시의 책임도 향소가 지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기 위해서는 품관층들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9월 26일 죄인이 도망, 탈출한 일로 사유를 갖추어 감사에게 보고하다. 향소 등이 使相(관찰사) 전에 발괄[白活]하려고 품관들을 이끌고 淸河로 향하였다. 掌務 향리를 잡아서 決杖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모두 청하 땅에 도착하였다. 향소 등이 모두 돌아왔다(權文海,《草澗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선조 14년, 48세시).

이와 같이 유향소는 수령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측면에서 그를 보좌하였다. 환곡의 분배와 감납, 형옥의 관리 등 지방행정 전반에 걸 쳐 수령을 보좌하면서 재지사회를 통치하고 지배해갔다.

(3) 향교와 사마소

유교국가로서 奪賢과 교육을 위한 기구로서 각 군현에 설립된 향교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향교의 교육기능을 서원이 설립되어 대체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⁸⁾ 16

²⁷⁾ 權 檢, 《永陽日記》(필사본, 영천군수시의 일기).

²⁸⁾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체하여 서원이 설립되는 과정과 退溪 李滉의 서원설립운 동에 대해서는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集文堂, 1997) 참조.

세기의 향교나 서원은 조선 후기에서 보는 것처럼 재지사족들의 향권기구로 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유향소와 함께 재지사족들의 향촌기구로서의 역 할은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교는 원래 국가에서 설립한 것이고 수령 의 관할하에 있는 것이어서 수령권과 사족권의 대립이라는 점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멀다. 그러나 향교 교생이 대다수 재지사족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으며, 考講 등을 통한 사족에의 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재지사족의 간과될 수 없는 향촌기구라고 하겠다. 향촌기구로서의 향교에 대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조선 초기 향교의 교육적 기능과 교생에 대한 연구가 약간 있을 뿐이다.29)

향교와 관련하여 司馬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향교와 같이 정부로 부터 인정된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재지사족세력의 의사대변기구로 존속하고 있었다. 사림파에 의해 건립된 사마소가 훈구세력에 의해 장악된 유향소와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지만,30) 사마소가 조선 초기부터 전국의 각지에 설립되어 유향소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재지사족의 향촌기구로 존 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31) 사마소는 유향소와 대립하는 시기도 있지만 협 조하는 관계가 기본적이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영천의 사마소에 대한 치죄 사건에서 볼 수 있다. 경상감사 李湛은 영천 향교 묘정의 오동나무를 베어낸 수령에 대해 항의하 고 욕보인 품관·교생 등과 사마소의 생원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수령과 재지사족의 대립, 국가와 사족간의 대립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사마소와 유향소는 오히려 협조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경상감사 이담은 재지사족들의 횡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²⁹⁾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校〉(《漢坡李相玉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69). 李範稷, 〈朝鮮前期의 校生身分〉(《韓國史論》3, 서울大, 1976).

^{-, 〈}朝鮮前期 儒教政策과 鄕校의 機能〉(《歷史教育》20, 1976).

³⁰⁾ 李泰鎭, 앞의 글(1972・1973).

³¹⁾ 윤희면은 사마소를 지방의 생원·진사들의 교육장소로 파악하였는데,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사마소에 생원·진사들이 모여 서로 시를 짓고 강마 하는 기능도 하였을 것이나, 그것을 성균관에 대체되는 교육기관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尹熙勉, 〈慶州 司馬所에 대한 一考察〉, 《歷史敎育》 37 · 38, 1985).

30 I.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요즈음 습속이 날로 그릇되어 留鄕所 외에 별도로 司馬所라는 것을 두어 하나의 官府로 만들고, 한 지역에서 제일 어른 노릇을 하면서, 논의를 주장하여 公私間에 폐를 끼치고 있으며, 수령을 헐뜯고 청찬하는 일도 그 손에서 나오고 있으니 현재의 폐풍 가운데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明宗實錄》권 26, 명종 15년 2월 계묘).

즉 유향소 이외에 사마소가 또 하나의 향촌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왕은 승정원에 전교하여 "유향소와 사마소는 지방의 큰 걱정거리이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폐를 끼치고 지나치게 무례하니,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고 하여 엄히 치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이 기사에 대한 史臣의 史評은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묘의 뜰의 나무를 벤 죄가 더 크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국가의 입장과 재지사족의입장에 선 사관의 견해가 크게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金炫榮〉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조선시대의 사회성격은 흔히 '양반관료제'라거나, '사족지배체제'라고 한다. 만약 그같은 성격 정의에 동의한다면, 특히 조선 중기 사회는 그 중에서도 사족 중심의 자율적인 향촌지배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부각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양반, 혹은 사족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왔을까. 또 그들은 어떠한 지배구조와 운영원리 속에서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존속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로 살피려면,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재지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향촌사회의 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에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두 가지의 커다란 과제가 있었다. 그 하나는 고려말이래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토호적인 향리세력과 상대하여 우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건국 이래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지방통제정책에 맞서서 어떻게 자신들의 자율적 지위를 확보하는냐가 바로 그것이었다. 첫째의 과제는 성리학의 정착, 보급과정이나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지만, 둘째의 과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수령이나 국가(중앙)권력에 의하여 사족들이 동원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더구나 개국 이후 잦은 정변과 중앙권력의 재편이 어느 정도 완수되면서는 새롭게 특권을 지닌 공신과 훈척들의 간섭과 견제를 배제하는 일까지 새롭게 부가된다. 그것은 훈척들이지방에 토지기반을 가지게 되면서 재지사족과 농민지배와 관련한 갈등이 야기되었기 때문이었다.1)

조선 중기 향혼자치조직은 어떤 의미에서 조선시대 사족의 향혼지배라는 기본적 성격을 특징지우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향혼사회는 조선 초 정립된 군현체제 아래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수령 중심의 행정조직체계와, 이에 일정하게 대립·갈등하면서 재지세력들이 추구했던 자율적 향혼지배, 그리고 이러한 지배층들과는 다르게 자연촌적인 체계 속에서 생활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층민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초 지방제도의 개편은 태종 13년(1413) 이후 단행되기 시작하여,2) 세조 2년(1456)에는〈郡縣並合事目〉의 반포로 郡縣의 통·폐합, 郡縣治所의 新定 등3) 군현정비가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세종 말까지는 군현의 수가 300여 개로 통폐합되었으며, 중앙정부는 궁극적으로 이들 지방군현을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외관의 품계격상(태종대), 수령구임법과 부민고소금지법 실시(세종대) 등등은 바로 이같은 향촌에서의 수령권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¹⁾ 李海濬, 〈朝鮮前期의 鄉村自治制〉(《國史館論叢》9, 1989).

^{2) 《}太宗實錄》 권 26, 태종 13년 10월 신유.

^{3) 《}世祖實錄》 권 5, 세조 2년 11월 기축.

그리하여 선초의 수령에게는 행정·사법·군사권 등 입법권을 제외한 담당 고을에서의 절대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적이며 수령 중심적인 향촌통치책은 기존 향촌세력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의 향촌세력의 두 계열은 고려시대 이래의 토호적 성격을 계승한 更族세력과, 새롭게 성장한 士族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그런데 이들 두 세력의 사회적 이해관계나 성장배경은 달랐지만, 조선 초기의 중앙집권 강화나 수령을 통한 관권 위주의 지방통제정책에 대하여는 모두가 비판적이었다. 다만 선초의 강화된 수령권에 대한 이족세력(향리)의 반발이 주로 수령능욕·구타·무고·모살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재지사족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같이 중앙정부가 기도했던 수령체제 혹은 수령권의 강화로 대변되는 지방통제 정책은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던 재지세력(토호·이족)들과 고려말 이래 재지기반 위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사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지방통제정책에 대응하여 향촌사회세력들은 다양한 자기 방어와 적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사족들은 바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림(사족)을 주축으로 하는 향혼자치 조직들을 형성하고, 이를통해 향촌의 자율을 추구하게 된다.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향촌지배세력의 수령권에 대한 반발이나, 수령 혹은 경재소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지세력 통제 욕구는 바로 이 시기 향촌사회가 갖는 복잡한 구조를 대변한다. 여기에 향촌사회 내부에서의 사족과 이족간의 갈등, 그리고 지주적 특권을 가진 사족과 기층농민 사이의 문제가 혼재되면서 조선 전기의 향촌사회는 중앙권력과 재지사족 양자간의 타협이 전제되는 '16세기의 사족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상에서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서로 대립적인 정치세력의 상충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성리학이라는 이념적 사회운영원리가 작용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향약시행을 둘러싼 논의나 향혼지배권을 선점·확보하기 위한 대립도 발생하였다.

⁴⁾ 李成茂,〈朝鮮初期의 鄉吏〉(《韓國史研究》5, 1970).李樹健,〈高麗後期「土姓」研究〉(《東洋文化》20·21, 嶺南大, 1981).

그러나 이같은 정치·사상적인 변화상과 함께 향촌사회 내부에서는 지주 층으로 성장하는 사족들이 자신들의 향촌지배권을 중앙권력(수령권)으로부터 지키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때로 그것은 향약이나 향규·향안과 같이 一鄉을 망라하는 조직형태로 구체화되기도 하였고, 그보다는 좀더하부체계로서 親隣・同志的 성격을 가지는 사족들의 결사체인 洞契 조직으로 성립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부언할 필요도 없이 성리학적 사족지배질서를 향촌사회에 이식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동계조직과 향약·향안·향규조직은 서로 기반과 배경이 되면서 이들 사족들의 이해를 대변·반영하는 향촌지배구조를 성립시켰으며, 적어도 16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이들조직의 결속력을 기반으로 사족들은 일향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16~17세기의 사족지배체제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과제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족들에 의하여 추진된 일련의 이 시기 향혼활동들이 모두 이러한 재지사족의 지위유지와 그 성장수단으로 모색되고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그 내용은 대체로 자율적인 재지지배권 확보와 결속력 의지를 반영하게 마련이었고, 그 모습은 유향소나 경재소의 조직과 운용, 향약과 사창제의 시행, 동계의 조직 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6세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부세운영과 향임층에 대한 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향규·향약·동계를 만들어 향리와 일반민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수렴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족들의 향촌지배구조를 우리는 鄕案秩序라고 부르는데 향안이바로 이들 주도적인 향촌사족들의 대표적인 조직이자 그 名案이었기 때문이다. 향안에 입록된 사족들은 '鄕會'로 대표되는 그들 중심의 합의체적 향촌권력기구를 통해 留鄕所(鄕所)의 좌수・별감 등 鄕任을 선출・통제하였고 '鄕規'를 만들어 吏胥와 하층민들을 통제하고 위로는 관권과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족이 매개가 되는 지방통치의 방식은 봉건정부의 당시 입장에서 보면 상보적인 타협의 소산이기도 하

⁵⁾ 李泰鎭,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였다. 즉 국가권력으로서도 지방지배에 있어 고려 이래의 토착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향리집단들을 제어하는 동반자로서 사족을 선택하여야 했던 현실, 그리고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와 물적 토대가 확고했던 재지사족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같은 향촌사회의 지배구조가 가능했던 기본 배경에는 이 시기 지배이념과 사족들의 위상강화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 사족들의 결사체적인 조직들이 발달할 만한 사회·경제·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성리학 이념의 정착과정, 15세기 이후 농법의 발달과 그에 수반한 경지의 확대과정은 사족들의 경제력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6) 더구나 아직은 사족들의 경제적 성장이 기층민과 마찰을 야기할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자율성과 성리학 교화이념을 앞세운 사족들의 향촌지배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며, 이해를 같이하는 사족들의 공동이해를 반영하는 洞契와 같은 결사체적인조직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기층민 지배도 가능하였던 것이다.7)

이러한 향촌의 자치와 자율추구 경향은 중앙권력의 통제와 지배층(사림·사족)의 공조적인 타협으로 일시 변형되기도 하고, 일정하게는 조선 전기 향촌사회가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던 한계 속에서 본래 목적했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꾸준히 그 자율추구의 성향을 지속시켰다.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1) 유향소와 경재소

조선 전기 사족의 향촌자치조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향소와 경재소이다. 앞에서 살핀 바처럼 조선 초기 관권 위주의 향촌정책은 선초부터 재지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들 재지세력들은 중앙의 집권적인 정책에 반

⁶⁾ 李泰鎮, 〈15~6세기 新儒學 定着의 社會經濟的 背景〉(《奎章閣》5, 1981).

^{-----, 〈16}세기의 川防(洑) 灌漑의 發達〉(《韓沽劤博士停年記念史學論叢》, 1981).

⁷⁾ 이해준,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1990).

발하면서 자신들이 주축이 되는 향촌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자율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향소 조직이었다. 이 시기 사족들은 유향소 조직을 통해 향론을 창출하여 자기들의 세력기반을 유지하 고 향촌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유향소란 유향품관이 모이는 장소라는 소박한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그 인적 조직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유향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건국 초부터 재지세력에 의하여 임의로 성립되어 人 吏와 官奴婢의 所犯을 규정하고⁸⁾ 있었던 듯하다.

조선 초기의 유향소의 모습은 태종 6년(1406) 6월에 "수령을 저훼하고 인물을 진퇴시키며 백성을 침어한다"는 반중앙집권적인 성향 때문에 혁파당하였던 것을 미루어 재지세력의 합좌기구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혁파조치로 중앙정부가 향촌세력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는 있었겠지만, 유향소가 재지사족에 의해 장악되거나 적어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 초기 중앙의 이러한 지방세력 통제 의지와 달리 유향소의 성립·운영은 재지품관세력의 성쇠라는 향촌의 개별적인 조건에 의해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의 단속이 완화되면 언제든지 재등장할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유향소를 혁파한 뒤 9년 만인 태종 15년(1415) 성격이 비슷한 申明色을 설치하였다. 의 신명색은 관찰사가 임명하고 수령보좌의 임무를 맡기는 등 유향소에 비해 관의 주도적 성격이 좀더 강화된 것이었다. 이는 재지품관들을 반관제화시키면서 한편에서는 그들의 향촌에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신명색은 명칭만 바뀐 것 뿐이지 재지품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향소의 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관제적 성격이 강했던 신명색마저도 국초의 유향소와 마찬가지로 토호적 성향 때문에 태종 17년 11월에는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10)

^{8) 《}成宗實錄》권 216, 성종 19년 5월 을해.

^{9) 《}太宗實錄》 권 29, 태종 15년 4월 병술.

^{10) 《}太宗實錄》 권 34, 태종 17년 11월 무인.

세종대에 이르면 이러한 지방통제책은 더욱 강화되어 부민고소금지법·수령구임법에 뒤이어 수령을 고소하는 군현의 강등조치(세종 11년;1429)11)가 마련됨으로써 수령권 강화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된다. 더구나 세종 17년에는 경재소 제도의 정비를 통해 연고지의 유향소를 장악하도록 함으로써,12) 유향품관으로 대표되는 재지사족의 지위와 지배력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재지사족들은 점차 자기보호의 수단으로 수령권과 타협하거나 결탁하는 경향도 보이게 된다. 세조 말에 행하여진 2차 유향소 혁과 이유가 국초의 수령능 멸과는 반대로 수령과 유향소의 결탁에 의한 부민침학에 있었던 것은 바로그러한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한편 지방 각 고을의 유향소를 감독하는 조직인 경재소도 유향소와 마찬가지로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할 수가 없다.13) 경재소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세종 17년 9월이었는데, 각 고을의 경재소에서 좌수 1員, 참상별감 2원, 참외별감 2원을 두어 향중의 공무를 관장하도록 하되 본향의 수령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14) 아울러 이러한 경재소 임원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경재소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2품 이상은 父의 內·外鄉, 祖의 외향, 曾祖의 외향, 母의 내·외향, 妻의 내·외향 등 8향을 검하도록 하고, 6품 이상은 처향을 제외한 6향, 참외는 조와 증조의 외향을 제외한 4향, 무직의 의관자제는 부모외향을 제외한 2향(부모내향)의 연고지 경재소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사심관이 1~3향만을 겸임한데 비해 경재소가 2~8향을 겸임하게 한 것도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종으로, 경재소 조직을 정비·강화함으로써 유향품관의 발호를 중앙에서 통제하려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중앙집권화 정책은 자체결속력을 강화해 가는 재지 세력의 반발에 의해 한계성을 노정하게 된다. 특히 향촌질서에 새로운 변화 가 초래된 성종대 이후에는, 경재소마저 설치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유향소

^{11) 《}世宗實錄》 권 44, 세종 11년 5월 병진.

^{12) 《}世宗實錄》권 69, 세종 17년 9월 기사.

^{13)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14) 《}世宗實錄》 권 69, 세종 17년 9월 기사.

와 결탁하여 관권을 침해하고 人吏를 침학하는 등 작폐를 자행하게 된다. 이는 성종 19년(1488)에 유향소가 복립되면서 경재소에서 유향소 품관을 택정하고, 만일 유향소가 작폐하는 경우에는 수령과 함께 경재소에서 이를 규제하도록 한 조치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향소의 인사권이 경재소에 주어짐으로써 훈구세력이 경재소를 장악, 복립된 유향소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성종 23년에 편집된《大典續錄》에서 확인되는 복립된 유향소의 조직은 다소 축소되어 있다.《대전속록》을 보면 유향소 색장의 인원은 府 이상이 4인,郡은 3인,縣은 2인으로 나타나고 있다.15) 또한 이 시기의 유향소 청사는 흔히 鄕射堂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이 시기에 향사당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성종대에 복립된 유향소가 사림세력들에 의해 이곳에서 향사례・향음 주례를 주관・실시토록 장려되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이것은 전통적인 향촌지배조직이었던 유향소에 주자학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당시의 사림세력은 주례의 향사례・향음주례 속에서 재지세력 중심의 향촌지배논리를 발견하고,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합리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성종대에 사람세력이 유향소를 통해 실시하고자 했던 향사례·향음주례 보급운동은 중종대에 이르면 향약보급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사람파 에 의하여 주장된 여씨향약 보급운동은 본질적으로 경재소·유향소 체제 아 래 빚어지고 있는 지방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지양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으므로, 그 시행의 논의과정에서 자연히 경재소·유향소의 혁파 문제 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16) 성종대에 복립된 유향소의 주도권을 훈구 세력에 빼앗긴 사람파들은 향약으로써 유향소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했던 것 이다.

이와 같이 유향소가 그 전래의 권한을 통제받고 경재소에 의해 장악되자 유향품관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점차 관권에 타협·순종하지 않을 수 없 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령의 불법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리하여

^{15)《}大典續錄》 권 3, 禮典 雜令.

^{16) 《}中宗實錄》 권 31, 중종 12년 12월 무오ㆍ권 36, 중종 14년 6월 을해.

유향소는 2차의 혁파를 당하게 되는데 충주 유향소의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부민들의 수령에 대한 고소가 사실상 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조 말에 충주민이 그 고을 수령의 비행을 고소하자 충주 유향소는 수령과 결탁하여 그 백성들을 침학하였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유향소는 이 때에 성종대와는 달리 전면적으로 혁파되었다.17)

한편 중종대에 사림파에 의해 경재소·유향소의 혁파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경재소의 폐단은 이후 여전히 확대되었다. 즉 경재소는 원래의 설치의도인 향풍의 斜正과 유향소의 작폐 감독을 소홀히 하고 향촌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노려 人吏를 침학하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선조 원년(1568) 5월에 장령 李憲國은 경연에서 이러한 경재소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혁파를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재소의 혁파는 그 폐단이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유향소와의 관계 등 상황논리에 의하여 지연되고, 한편으로는 유향소와 경재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그 폐단을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18) 경재소는 그 후 왜란을 거치면서 그 불법부패로 유해무익함이 거론되다가 선조 36년 정월에 혁파되었다. 19)이와 함께 유향소의 임원을 수령이 택정하게 됨으로써 조선 초기에 수령까지 규제하던 유향소가 이제 조선 후기에는 수령의 보좌역으로까지 격하되게 되었다. 20)

(2) 향약과 향규

향약과 향규는 조선 중기 사족의 향촌자치조직으로서 주목된다. 향약은 어의상 '一鄕의 約束' 또는 '鄕人間의 약속'이란 의미이지만, 향민 중에서도 특히 사족들이 주축이 되는 조선시대 향약의 성격은 외형상으로는 중국의〈여 씨향약〉혹은〈주자증손여씨향약〉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 조선 중기에 조선 적인 특성을 가지며 성립되는 향약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원과 전통을

¹⁷⁾ 李泰鎭, 앞의 글(1986).

^{18) 《}眉巖日記抄》 무진 5월 11일.

^{19) 《}宣祖實錄》 권 158, 선조 36년 정월 갑신.

²⁰⁾ 金龍德, 〈京在所論〉(《韓國制度史研究》, 一潮閣, 1983).

가지고 있다. 우선 그 첫째는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알려진 향 약의 성격을 이어받은 것이고, 둘째는 사족들에 의해 마련된 향규가 향약의 명칭을 빌어 외형적 논리를 갖추는 경우이다. 조선 중기에는 흔히 양자가 착 종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자를 좀더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전자의 성격이 강하면 '鄕約', 후자의 성격이 강하면 '鄕規'라 불러야 할 것이다.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향촌사회의 안정원리로 주목받기 시작한 〈주자증손 여씨향약〉은 중종대부터 그 보급운동이 추진되었다. 즉 중종 12년(1517) 6월 조정에서는 향약보급문제가 논의되고, 7월에는 적극적인 실시가 결정되게 되 었다. 특히 경상도 관찰사 金安國에 의해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본》이 간행 되어 반포됨에 따라 향약은 급속도로 보급되었는데, 이 시기의 향약보급운동 은 감사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향약은 《주자향약언해본》을 대본으로 한 획일적인 내용으로 백성들의 성리 학 교화에 초점이 두어졌을 뿐 조선적인 변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였다.

그리고 중종대의 향약보급운동은 훈구파에 의해 장악된 유향소·경재소가 존속된 상태에서, 사림파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졌고, 또 중종 14년의 기묘사 화로 사림세력이 축출되었으므로 기묘사화 이후에는 훈구세력에 의해 전면 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향약실시는 명종 · 선조대에 이르러서야 각 지방의 현실적인 여건을 참작한 개별적인 시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명종대에는 개별적인 향약시행이 용인되고 趙光祖 당시의 향약과 달리 구휼적 성격이 강조되는 형태였다. 명 종대에 개별적으로 실시된 향약의 실례로는 명종 11년(1556)에 李滉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예안)鄕立約條〉(실은 鄕規의 성격이 강함)와 명종 14년에 李珥 가 서문을 쓴 〈坡州鄕約〉 등이 있다.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는 선조 초에 이르면 예조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전 국적인 향약실시논의가 다시 제기된다. 그러나 당시의 향약논의는 중종대의 강력한 향약시행 노력과 달리, 주자향약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주자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자향약을 수정, 변용하는 응용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향약시행논의에서는 동계·향도조직의 활용방안까지 제기 되기도 하였다. 선조 6년(1573) 9월에는 예조에서 주자향약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간추려 정하여 올렸는데 그 내용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²¹⁾

- ① 매월마다 개최하는 강신회는 몇 개월에 1회로 전환할 것.
- ② 강신회 때는 술 한 동이와 밥 한 그릇으로 한정할 것.
- ③ 강신회 집회장소는 향교로 한정하지 말고 부근에서 각자 상회할 것.
- ④ 유소자가 존장자에게 6차 예견하던 것은 세배시에만 예견할 것.
- ⑤ 善惡籍은 善籍만 기록하고 惡籍은 폐기할 것.
- ⑥ 외방으로 사족이 적은 곳은 수령이 약정을 겸하게 할 것.

이 중 ①~④는 조선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번잡함을 덜기 위한 조치로 이후에 실시되는 개별 향약들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③은 앞서 동계나 향도 조직의 활용을 제기했던 재상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향약실시가 군현 단위에서 면・리 수준으로 현실화되어 갈 것을 암시해 주 고 있기도 하다. ⑤는 약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향약기구가 행사하는 처 벌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중종대에 시행되었던 향약이 善惡籍의 운영 을 엄격히 하고 수령권을 능가할 정도로 형벌이 마구잡이로 사용된 데서 야 기되었던 폐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국적으로 실시된 당시 향약은 중종대 기묘사림의 향약에 비하여 사회개혁적인 성격이 약하였다. 또한 수령 을 대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향약에 깊숙히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향약의 성격도 주자학적 교화를 의미하는 권선징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 와 같은 향약시행은 선조 7년 2월 西原(청주)향약의 실시 경험이 있는 이이 가 '先養民後敎化'를 내세워 '鄉約實施太早論'을 주장하여 정지될 때까지 전 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이의 이 향약정지론 이후에는 더 이상 전국의 일률 적인 향약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향촌마다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별적인 향약 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인 여씨향약 보급운동 이전에도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향약의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 된 자료에 의하면 향약이 가장 일찍 실시된 지역은 광주였다. 세종대(15세기

^{21) 《}宣祖實錄》 권 7, 선조 6년 9월 갑진.

중엽)에 金文發에 의해서 이루어진 광주지역의 향약은 문종 원년(1451)에 李 先齊와 현감 安哲石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후 성종 원년(1470)에는 丁克仁이 태인에서 향약을 실시하였음이 《古縣洞約誌》에서 확인된다. 또《師友名行錄》 에 의하면 姜應貞도 성종 9년 이전에 향약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新 增東國興地勝覽》전라도 용안현조에는 향음주례 기사와 함께 향약의 4대 조 목과 5가지 출향규정이 기록되어 있고, 安鼎福의 《順庵集》에서도 鄭汝昌이 안음에서 향약을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단편적 이긴 하지만 중종대의 전국적인 향약보급운동 이전에도 개별적인 실시 움직 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향약의 시행이 반드시 여씨향약의 영향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향혼지배층의 향음주례나 사족계열의 족계형태, 그리고 기층민 중심의향도 등 향혼공동체조직과 연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조선 중기의 향약 가운데 향규와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향약으로 이이의 〈서원향약〉과 〈해주향약〉은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향규는 향안에 오른 향원들간의 약속으로 유향소의 조직 즉 座首의 선임, 소관업무, 郷案入錄자격 및 절차, 향계의 영수인 鄉先生 및 그 서무인 鄉有司의 업무, 호장·이방 등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었다.²²⁾ 이들 규약의 형태는 조선 초기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전하는 실제의 자료는 없다. ²³⁾ 이러한 향규는 성종대 이후 유향소가 훈구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향촌의 사림세력들이 이에 대해 별도의 향촌지배질서를 도모하게 되면서 그 성격이변질되기 시작했다. 즉 성종대에 향사례·향음주례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중종대에 향약보급운동이 중앙으로부터 시도되자 향촌의 사족들은 향권장악

²²⁾ 金龍德,〈鄉規研究〉(《韓國史研究》54, 1986).

²³⁾ 이 조선 초기의 유향소들이 각 지역 유향품관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측한다면, 처음 단계의 규약들은 번잡하고 세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간략한 골격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세조 4년(1458)에 성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璿鄉憲目序〉와〈孝寧大君鄉憲〉은 바로 이 시기유향소의 성격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성종 19년(1448) 유향소가 복립될 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留鄉所復立事目〉과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보여진다.

과 향촌통제의 이념을 향약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중종대의 전국적인 향약보급운동이 실패한 이후, 명종대부터 지역별로 개별적인 향약의 보급이 추진되자 하층민에 대한 교화보다도 향혼지배에더 큰 관심을 지녔던 지배사족들이 새로운 시도를 강구하게 되며, 그 결과가바로 향규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부연하면 이 시기 재지사족들은 종전의지역적·신분적 성격이 반영된 결사체로서의 '유향소' 조직과 공동체조직의성격이 본질이었던 향약 본연의 성격을 가미하여 사족들간의 향촌공동체로서 '향약'을 만들어 냈고, 그 운영주체들의 결사체적 규약이 바로 '향규'였던 것이다.

이 시기 향규가 실제 운영되는 사례 중에 鄉約‧鄉規‧鄉憲들이 명칭상 혼효되는 것도 이같은 시대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이며, 조선 전기의 향규 중에서 '향규'라고 불려져 기록된 것도 안동부의 鄕規舊條 23조가 유일한 예이다. 향규에 참여하는 고을 유력 인사의 명단은 향안에 등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향안에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흔히 6조(부·조부·증조·고조·외조·처부) 중에서 3명(지역에 따라서는 4명 혹은 2명)이 이미 舊案에 기록되어 있어야가능하였으니, 이를 三鄕(四鄕·二鄕)이라고 하였다. 삼향 미달인 경우에는 대읍에서는 유사를 정하여, 소읍에서는 향회에서 각각 圈點 또는 가부를 통문하여 一不, 二不 혹은 三不이하면 향안입록을 허락하였다.

향안에 등재되어 있는 향원들은 유향소에서 향규를 운용하여 향중의 제반 사를 처리할 행정사무원에 해당하는 향임을 택정하였다. 그러나 이 유향소가 향원조직인 향계의 최고기구는 아니다. 이 향임들을 감독하는 향계의 최고 기구는 鄕先生이고 그 아래에 향유사 등이 있어서 일향 여론을 좌우하였으 니 이들을 보통 鄕執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향규는 향촌의 현족들인 향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규 자체가 일향의 지배권 즉 향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향규에 담겨있는 내용이 반드시 사족들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향권의 장악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향원 외라도 규제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의 사회가 주자학적 명분에 입각한 향촌질서를 추구하고 있었으므로,

하층민에 대한 주자학적 교화가 가미될 수밖에 없었다.²⁴⁾ 이것이 바로 향약과 향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점으로 생각된다. 그 후 신분질서의 혼동이 극심해지는 왜란 이후에는 사족들의 향촌에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자 상하민간의 守分儀式이 강조되면서 교화가 주목적인 향약이 성행하게 되었다. 나아가 경재소의 혁파와 영장사목의 반포는 유향소(향청)의 변질을 초래하였으며 향규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도록 하였다.

(3) 동계와 동약

이상에서 살펴본 유향소나 향약·향규로 대표되는 사족들의 자치조직들은 군현 단위의 규모로서 신분적 위상을 엄격히 하는 지배층의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은 수령으로 대변되는 중앙권력 즉 관권에 대항하는 조직으로서 일정하게 향혼자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군현 단위는 아니지만 지배신분층인 사족들의 좀더 축소된 범위를 가지는 조직으로 洞契·洞約조직도 있었다.

동계는 一洞 구성원간의 조직으로 族契·洞憲·洞規·洞約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²⁵⁾ 동계가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말선초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이미 동계의 시원적인 형태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미 사족이 중심이 되었던 촌락 단위 동계의존재가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고려시대부터 토착적 기반을 가졌던 이족들과는 달리 조선 초기 향촌재지 사족들은 대부분의 경우 새롭게 성장하거나, 그들의 터전을 부식하면서 족적 인 기반을 축적시켜 간 부류들이었다. 따라서 의식과 목표를 같이 하는 유사 한 성격의 사족계열 인사들은 자신들의 재지기반을 토대로 동계 형태의 결 사체를 만들어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계조직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대체로 사족 중심의 신분제적 질서가 강화되고 지주제가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던 16세기였다. 동계조직은 우선 이

²⁴⁾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震檀學報》58, 1984).

²⁵⁾ 鄭震英,〈16世紀 安東地方의 洞契〉(《嶠南史學》1, 嶺南大, 1985). 金龍德,〈洞契考〉(《斗溪李丙燾博士九旬記念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념이나 구성원의 신분적 권위를 과시하는 형태로 조직되며, 따라서 구성원의 자격과 入契의 규정·절차도 엄격하였다. 동계조직의 출현은 재지사족들의 자체 결속을 목적한 것이었고, 그러한 결사체적 조직력으로 향촌사회의 대표 자임을 자임하면서 관권과 대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향규조직의 하부구조로서 동계가 구체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례도 볼 수 있으며, 또 동계 조직은 일향의 사족지배를 가능케 한 배경으로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대체로 16세기의 동계조직들은 새롭게 재지기반을 마련하여 가는 사족층의 결사적인 성격이 강하여 ① 친린적인 유대, ② 학문적인 성향이나 동문의식, ③ 연령이나 지역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성리학적 사회질서와 이념을 향혼사회에 이식시키는 것에 공감하거나 앞장선 부류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동계의 창립 주역들은 향약이나 향안·향규 등 군현 단위향혼자치조직의 핵심 성원으로 진출하거나 그에 동원되면서 사족의 일향지배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⁶⁾

이 시기 사족 중심의 동계(동약)조직들은 하나의 촌락, 혹은 지연·혈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수개의 자연촌락에 거주하는 유력 姓氏나 사족집단의 결사체적 성향이 강하였다. 사족들은 동계조직들을 통해서 하층민을통제하려 하였고, 또한 이를 매개로 수령권·관권과 유대를 긴밀히 하거나타협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대표성의 존속은 일정하게나마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방편도 되었을 것이다.

동계조직은 사족들의 결사체로서 조직구성원의 신분적인 제한규정이나 가입의 절차, 운영규정 등에 강한 규제들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간의 평등성이 전제되지만 조직 외적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 결사체로서의 동계·동약들은 하나의 독립된 촌락공동체만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인접 수개의 촌락을 그 지배 아래 운용하면서 대외적인 대표성과 권위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²⁶⁾ 李海濬, 앞의 글(1990).

주지하듯이 '향약-동계·동약'으로 이어지는 사족 중심의 결사체들은 조선 전기 사람세력이 그들의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향촌사회에 확산시켜 가는 과정에서 보편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확산과 사족의 정치적 입장 변화에 따라 이들 조직들은 대상범위와 조직구성원의 폭을 변모시켜 왔을 뿐이었다. 예컨대 조선 초기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族契나 門人契,同甲契 등등의 형태로 단초를 연 사족결사체조직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향 규나 향약류로 성장'하기도 하고, 수령 중심 혹은 관권에 의해 강제되던 군현 단위의 향약이 유명무실화되면서는 하나 혹은 수개의 인접한 촌락을 연계시키는 동계·동약형태로 변용되기도 하였다.

16~17세기 상·하합계는 사족층과 그들의 사회경제 기반이었던 촌락민사회를 하나로 묶은 조직이었다. 매우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이황의〈溫溪洞規〉(1568년) 중 洞숙에서 보여진 매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사족(지주)층의 입장들27)은 이 시기가 되면 "同胞幷生 不計貴賤"²⁸⁾이라는 표현이나 "하인이나노비들도 비록 명분은 다르나 天命之性을 함께 받았다"²⁹⁾거나, 또 "士夫·平人·庶孽·庶民·僕隸는 모두가 一類"³⁰⁾라는 등의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강력한 통제나 지배의지가 무의미해졌다고 할 만큼 완화되고 회유적인 것으로 바뀐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시기 동계·동약조직들이 점차 사족들에게서 유리·이탈되어 가는 하민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대부분의 이 시기 동계·동약들이 촌락내의 제반사, 예컨 대 교량이나 도로의 보수·산림의 보호 등에 직접 관여하고 洞事에 태만한 사람들을 '黜契'가 아닌 '黜洞'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역시 당시의 동계조직이 촌락공동체적 기능에 일편 주력하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

²⁷⁾ 예컨대, "本主이건 地主이건 무례불손한 자, 무리지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자, 川防에서 벌목하는 자, 밭에 모래 흙을 흘려 보내는 자" 등에서 보는 바처럼 下民(奴婢)에 대한 통제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李 滉,《退溪集》, 溫溪洞規 洞令).

²⁸⁾ 徐思遠,《樂齋集》 권 6, 河東里社契序(1592년).

²⁹⁾ 琴蘭秀,《省齋集》 권 2, 洞中約條小識(1598년).

³⁰⁾ 朴 絪,《无民堂集》,三里鄉約立議(1611년).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16~17세기의 동계조직들은 이같은 일련의 사족지배체제 변동과 연결되면서 특유의 성격을 갖게 된다. 대체로 그것은 기존 촌락사회의 운영원리를 기조로 하면서 여기에 상·하 洞民을 결속시켜 사족적 신분질서를 재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31) 이러한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는 동계의 형태가바로 상·하합계였던 것이고 이를 통해 사족들은 기층의 민중조직을 포용·흡수코자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성격을 대변하는 이 시기의 대표적 동계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565년, 靈岩 鳩林里 西湖洞憲 1584년, 安東 河回洞契 1601년, 任實 洞中修契(吳天民) 1618년, 安東 河回洞契(重設立議) 1666년, 泰仁 古縣洞約 1688년, 沙村里約(南夢麥) 17세기 후반, 靈岩 花樹亭洞約 1692년, 宜寧 郷約行規(李崇逸)

내용상 이 16~17세기의 동계, 동약조직은 역시 본질적으로는 사족 중심의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동계는 향촌사회에서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가 정착되면서 그 기능의 폭이 증대되어 간 조직이었으며, 일정하게 그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운영상 여러 형태의 하층민의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미구에 새로운 성격변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즉 사회변화가 급속해지는 18세기 이후가 되면 재지사족을 매개로 하던 기존의 수취체계가 점차 사족을 배제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동계조직 역시 수령향약의 하부구조로서 共同納 체제 속에 포함되면서 그 본질적 성격은 변모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³¹⁾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統制策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 중심으로-〉(《震檀學報》58, 1984).

韓相權. 앞의 글.

朴京夏、〈倭亂直後의 郷約에 대한 研究-高坪洞 同系를 중심으로ー〉(《中央史 論》5, 中央大, 1987).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이같은 조선 중기의 향촌 자치조직은 16세기 말~17세기 초반의 양란을 거치면서 기본 구조와 틀을 점차 변모시켜 갔다. 그렇다고 당시의 모습이 이 러한 사족의 기본적인 향촌사회 지배력과 구조를 모두 잃어버린 채 해체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배력의 내용이나 적용의 범위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양란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과 함께 신분혼효로 인한 양반신분층의 증가와 양반권위의 축소는 사족들의 자체 분열현상을 불러와 종래와 같은 사족들의 전일적인 향혼지배는 불가능해진다. 17세기 중반 이후의 향혼사회구조를 특징지우는 향안질서 해이의 모습은 향촌자치조직의 성격에도 그대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는 전국적인 농촌·농민 층의 피폐를 가져왔고, 재지사족들의 경우는 많은 세력들이 양란의 과정에서 기반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구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 성씨들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양란 이후의 사회변화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여온 신흥 향촌세력의 대두로 사족들의 지위가 도전을 받게 되자 사족들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제 사족들은 과거의 향안·향규·향약 등을 통한 일향의 지배보다는 혈연적인 족계를 만들어 문중의 결속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지연과 혈연(동족)적인 촌락을 중심으로 자기방어를 모색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하층민과의 유대가 강조되는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동약)가 일반화하면서 발전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 시기 사족조직의 특징적인형태였던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가 일반화되는 현상은, 양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족지배체제가 동요됨에 따라 대응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상하합계는 향촌사회구조의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후속될 더욱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상하합계는 사족층들이 촌

락사회 내에서의 상하민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인 동시에, 한 편으로 보면 하층민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음을 노증한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좀더 후대에 이르면 재지사족들은 각 문중별로 족적인 기반과 유대, 조직의 강화, 이를 토대로 동족촌락의 형성·발달, 또 그것을 기반으로 문중권위의 상징으로서 서원·사우를 건립하는 양상이 만연되기에 이르렀다. 32) 즉 18세기 이후 사족 중심의 동계·동약조직은 향권과 관련된 부면에서도 수령권이나 향리세력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 시기 사족들의 한계성을 반증하는 일면으로, 점차 사족들은 촌락과 동족적 기반을 모체로 자체결속력을 다지는 방향으로 현실 대응의 방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중적인 서원·사우의 건립이나 성씨별 상징물의 과시적 표출과 일정하게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특정 가문 중심의 권위과시나 결속력 확보는 타 성씨와 관련될 때 상대적인 폐쇄성과 대립의식을 조장하게 마련이었다. 33)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향촌사회 구조변화와 상당 부분관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과거와 같은 통일된 사족들의 입장이나 이해가 존속하기 어렵게 되면서 鄕案秩序마저 무너져 갔던 것이다. 34)

〈李海濬〉

³²⁾ 李海濬, 〈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韓國文化》14. 서울大, 1993).

³³⁾ 李海濬,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東洋學》23,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93).

³⁴⁾ 李海濬, 〈조선후기 사회사연구의 성과와 전망〉(《韓國史論》24, 國史編纂委員會, 1994).